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전략기술 특허소송에 기술심리관 참여 의무화〉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14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전략기술 특허소송에 기술심리관 참여 의무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현황	3
다. 검토의견	8
라.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III. 검토의견

1. 국가전략기술 특허소송에 기술심리관 참여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5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심리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 중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는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생략)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u>. 단,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현황

- 특허법원의 신설(1998. 3. 1.)로 특허사건에 대한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장¹⁾함에 따라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 제도가 특허법원 신설과 함께 도입되었음²⁾.
- 기술심리관은 특허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부 합의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54조의²⁾).
- 현재(2023. 12. 31.) 특허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심리관은 총 17명(기술심리서기관 15명, 기술심리사무관 2명)이며, 이 중 기술심리서기관 15명은 특허청 심사관 또는 심판관 중에서 법원공무원(4급)으로 임용된 사람들이고, 기술심리관 2명은 일반임기제 5호로 채용된 사람들임.

1) 종전의 특허쟁송제도는 특허청의 심판소, 항고심판소의 심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다투던 절차였는데,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5. 9. 28. 92헌가11 등)의 진행 과정에서 「특허법」 및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통합된 특허심판원이 설치되고, 이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 되었음.

2) 특허법원 홈페이지, 법원 소개(연혁, 조직 등) 참조, 2025. 4. 16. 확인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현황>

(2023. 12. 31.)

법원	기술심리서기관		기술심리사무관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허법원	15	15	2	2	전기·전자·통신분야(5) 화공·약품분야(6) 기계·금속분야(5) 토목·건축분야(1)

자료 :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p. 297

-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인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권리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의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짐.

현행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1호에 규정된 사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과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취소소송에 해당함. 심결취소소송은 2심제로, 1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명시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품종보호권(이하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특허권등”이라 함)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말함.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통상 심결취소소송과 구별하여 특허침해소송으로 일컬어짐.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심은 지방법원 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6개 지방법원 전속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복 관할)이며, 해당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음.

- 기술심리관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위 사건들 중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은 미포함)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이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이나 특허침해소송에는 기술심리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음.

다만,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조사관이 배치³⁾되어 있으며, 기술조사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 관하여 자료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조사관에게는 기술심리관과 달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법원행정처 답변자료(2025. 4. 18.)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 3. (생략)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상표법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5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심리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 중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송의 심리에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부의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는 한편, 재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재판부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성 보완 필요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심리 참여를 의무화하는 소송의 범위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중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 실무와 특허분쟁의 실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정의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이 각각 이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8.>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특허 분쟁 내용의 복잡·고도화 현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리의 충실성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사건에 관하여 기술심리관을 의무적으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기술심리과의 역할과 권한 범위, ‘국가기술전략·첨단산업전략’ 의미의 모호성, 인력 및 예산 충원의 선결 문제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중요기술 분야의 특허심판 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기술심리관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규정 내에서도 기술심리관의 참여 기술 범위에 제한이 없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사업의 심결취소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심리관의 심리 참여는 사건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므로, 법원 검토의견 및 법원 실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